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49
----------	------

2016년 12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자 : 2016년 10월 31일
- 다. 회부일자 : 2016년 11월 03일
- 라. 상정결과 :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년 12월 19일, 상정·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고흥석)

### 가. 제안이유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시민예술단체 등의 지원을 법제화하여 문화발전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제정 목적,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2)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5~6조)
- (3) 생활문화지원단 및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7조~10조)
- (4)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1조)
- (5) 생활문화센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13조)
-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부칙)

###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 복지법」
- (2) 예산조치 : 2017년 예산반영(서울문화재단 출연금 교부)

(3) 협의사항 :

- ①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②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협의완료
- ③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
- ④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⑤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제외
- ⑥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 ⑦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2) 기 타 :

- ① 입법예고(2016. 8. 18. ~ 9. 7.) 결과 : 의견없음
- ② 비용추계 등 자료 : 별도 붙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가. 제정안 개요

- 동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를 활성화하여 서울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표 1>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지역문화진흥법」
<p><b>제7조(생활문화 지원)</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p> <p>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나. 조례 제정 개요

- 동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에 관한 진흥을 도모하고, 서울시가 2016년 6월 발표한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에 의해 추진 중인 생활문화 관련 사업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제안됨

<표 2> 생활문화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문내용

법령 구분	생활문화 관련 조문내용
지역문화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에서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규정함</li> <li>-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안에 포함시킬 것을 규정함</li> <li>- 제7조(생활문화 지원)부터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문화진흥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li> </ul>
문화예술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시책과 권장)에서 국민 문화예술 활동의 권장·보호·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li> <li>-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부터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적·육성)에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li> <li>-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 강구 의무를 규정함</li> </ul>
예술인 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는 예술인이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지위와 권리를 규정함</li> <li>-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는 물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함</li> </ul>

○ 지자체 중 동 조례안과 유사조례를 갖고 있는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로 해당 조례는 모두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의 경우, 가장 최근에 시행된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와 구조적으로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음

<표 3>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유사조례

연번	지자체	조례명	최초 시행일
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2014.05.26.
2	경기도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4.08.01.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5.10.06.
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2015.12.28.
5	충청북도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2016.04.01.
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6.10.31.

○ 서울특별시와 서울문화재단은 동 조례안과 관련된 사업을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2016년도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내 생활문화팀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음

<표 4> 생활문화 관련 서울시·서울문화재단 2017년 예산안

연번	사업명	예산반영 현황	비고
1	시민예술 동아리 육성 지원	240	문화본부 생활예술팀
2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2,200	출연금(서울문화재단 고유사업)
3	생활문화 활성화	4,343	출연금(서울문화재단 고유사업)
	<b>총 액</b>	<b>6,783</b>	

다. 조례안 체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14개 조에 걸쳐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안 제3조부터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과 생활문화 사업의 지원(안 제5조부터 제6조), 지원단의 설치·운영과 센터 설치·운영(안 제7조부터 제8조), 예산의 지원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안 제9조부터 제10조), 위원회(안 제11조), 관리·운영의 위탁 및 검사·보고(안 제12조부터 제13조) 등을 규정함

<표 5> 조문체계 및 주요내용

조번호	조제목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름
제2조	정의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정의 명시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의 정함 외에는 동 조례안을 따름
제4조	시장의 책무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권장·보호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 규정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생활문화사업의 지원 등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의 운영·지원
제7조	지원단 설치·운영 등	서울문화재단에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단을 설치·운영
제8조	센터 설치·운영 등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9조	예산의 지원	지원단 및 센터의 지원 규정
제1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생활문화지원단장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실적,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제11조	위원회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협치위원회의 운영
제12조	관리·운영의 위탁	센터 관리·운영의 비영리법인·단체 위탁
제13조	검사·보고 등	서울특별시시장의 지원단·센터 검사·보고 규정
제14조	시행규칙	
부 칙		

**라. 주요 조문별 검토**

- 동 조례안의 총칙규정은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시장의 책무)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1조(목적)에서 동 조례의 근거를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르고 있으며, 안 제2조(정의)에서는 “생활문화단체”를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의 “예술인”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람이 모이거나 동아리 간 결성하여 참여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생활문화”의 정의를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예술인”을 생활문화단체의 구성원으로 배제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로 사료됨

<표 6>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표 7>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안 제4조(시장의 책무)는 서울특별시장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과 서울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의 권장·보호·육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는 서울특별시장의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이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종합계획” 및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 5년 마다 추진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생활문화지원단 및 생활문화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전문인력 육성, 예산 등이 포함되어 생활문화 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도모를 꾀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표 8>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 안 제6조(생활문화사업의 지원 등)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시 차원의 사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자치구, 개인·기업 등 민간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생활문화시설, 동아리, 전문인력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생활문화단체, 동아리 등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지원단 설치·운영 등)는 서울문화재단 내에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문화 진흥 사업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축제 개최, 국제교류, 기초조사, 연구, 동아리의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전반적인 기초 사업을 총 망라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서울문화재단의 ‘시민문화본부’가 2017년도 예산안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및 ‘생활문화 활성화’와 유사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을 별도의 추진단 구성으로 운영하기보다 기존 조직을 활용해 전문인력만을 보강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우리 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센터 설치·운영 등)의 경우, 이미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중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가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9조(예산의 지원)는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단과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예산 지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은 생활문화지원단장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실적,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단이 서울문화재단에 속하여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 관리를 이미 받고 있으며, 생활문화지원단이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관리 감독 아래 있는 조직인데 단장이 시장에게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아 조문 전체의 삭제가 필요함

<표 9> 안 제5조 수정의견

제정안	수정의견
<p><u>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생활문화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u></p> <p><u>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lt;삭제&gt;</p>

- 안 제11조(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단과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예산·결산, 생활문화 관련 사업 개발·추진, 생활문화 우수 지원대상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협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 활동 실적이 미미한 위원회가 다수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로부터 꾸준히 제기 되었으며,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2016.2)’에 따르면 위원회 설치 전 일정기간 동안 T/F(Task Force)형 자문단으로 구성·운영을 진행한 후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을 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조례상의 새로운 위원회 구성 시 신중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는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운영을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검사·보고 등)는 서울특별시시장의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단과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가능하게 하

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됨

<표 10> 수정의견 종합

제정안	수정의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정안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생략)	제4조(시장의 책무) (제정안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u>문화도시 발전계획</u> 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략) 1. ~ 6. (생략)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u>문화도시 종합계획</u> 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정안과 같음) 1. ~ 6. (제정안과 같음)
제6조(생활문화사업의 지원 등) (생략)	제6조(생활문화사업의 지원 등) (제정안과 같음)
제7조(지원단 설치·운영 등) (생략)	제7조(지원단 설치·운영 등) (제정안과 같음)
제8조(센터 설치·운영 등) (생략)	제8조(센터 설치·운영 등) (제정안과 같음)
제9조(예산의 지원) (생략)	제9조(예산의 지원) (제정안과 같음)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생활문화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제11조(위원회) (생략)	제10조(위원회) (제정안과 같음)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생략)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제정안과 같음)
제13조(검사·보고 등) (생략)	제12조(검사·보고 등) (제정안과 같음)
제14조(시행규칙) (생략)	제13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부칙 (생략)	부칙 (생략)

마.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에 관한 진흥을 도모하고, 시책사업인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에 의해 생활문화 관련 사업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동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시행되고 있는 바 제정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단의 경우 서울문화재단에 이미 중복성이 강한 사업을 추진 중인 부서가 운영 중에 있고,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협치위원회는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의해 설치 및 운영에 실효성을 점검해야 하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1월 28일에 제정되었음에도 동 조례안의 제정이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졌고, 생활문화 관련 사업의 대부분이 서울시 문화본부 내 생활문화팀이 아닌 서울문화재단에 이관되어 사업주체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받았던 바 향후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설계 및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조문내용 중 ‘문화도시발전계획’을 ‘문화도시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를 삭제하여,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10조부터 제13조로 수정함.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49
----------	---------

제안연월일 : 2016년 12월 19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 수정이유

- 조문내용 중 ‘문화도시발전계획’을 ‘문화도시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사업 계획서 등의 제출’ 관련 조항을 삭제함

## 2. 주요골자

- 안 제5조제1항 중 “문화도시발전계획”을  
“문화도시종합계획”으로 하며,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를 제10조부터 제13조로 변경함

##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문화도시발전계획”을 “문화도시종합계획”으로 하며,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10조부터 제13조로 수정한다.

### < 수정안 조문대비표 >

제정안	수정안
<p><b>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b>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u>문화도시발전계획</u>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1. ~ 6. (생략)</p>	<p><b>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b>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u>문화도시종합계획</u>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p> <p>② (제정안과 같음)</p> <p>1. ~ 6. (제정안과 같음)</p>
<p><b>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b> ① 생활문화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lt;삭제&gt;</p>
<p><b>제11조(위원회)</b> (생략)</p>	<p><b>제10조(위원회)</b> (제정안과 같음)</p>
<p><b>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b> (생략)</p>	<p><b>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b> (제정안과 같음)</p>
<p><b>제13조(검사·보고 등)</b> (생략)</p>	<p><b>제12조(검사·보고 등)</b> (제정안과 같음)</p>
<p><b>제14조(시행규칙)</b> (생략)</p>	<p><b>제13조(시행규칙)</b> (제정안과 같음)</p>
<p>부칙 (생략)</p>	<p>부칙 (생략)</p>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동아리 간 결성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동아리”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지원단 및 생활문화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4.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육성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문화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시설, 동아리, 전문인력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2.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생활문화단체, 동아리 등의 사회적 공헌기회 마련
5.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생활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등에게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등에게 생활문화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제3항의 사업 중 그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에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지원단에 단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 및 평가
  2. 생활문화 축제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기초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6. 생활문화 진흥 관련 교육·홍보·전파
  7.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
  2.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지원
  3.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및 소품·장비 등의 지원
  4.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①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지원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
- 2. 생활문화 관련 사업의 개발·추진 등에 관한 사항
- 3. 생활문화 우수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원단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생활문

화 및 경영관리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검사·보고 등)** ①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